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월)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8. 5. 이용진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 1호)
- 나. 회부일자: 2026. 8. 1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6. 8. 3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52조¹⁾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분증의 규격·제식 등(안 제3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5조)
- 의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

1)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 입법예고: 2026. 8. 20.~2026. 8. 24.(의견없음)

※ 기존에 운영되던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훈령)」은 본 규칙 제정 및 시행일에 맞추어 별도 내부 결재를 통해 폐지할 예정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정경)

가.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상위법 충돌 여부)

- 지방자치법 부합성: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의원 신분증 관리는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자치 사무이므로, 기초의회가 자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권한상 명백히 적법함
- 법령 저촉 여부: 국가 상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과 충돌하는 사항이 없음
- 규범 위계의 정비: 대외 규범력이 낮은 행정 내부 지침(훈령)에서 의회규칙으로 격상하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함.

나. 입법 형식의 적정성

- 조문 수(6개조)와 부칙(2개조)이 규율 대상의 범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제정되었음
- 별지 서식(발급대장, 재발급신청서)을 구체화하여 실무 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통해 기발급 신분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안정성을 도모한 점은 입법기술상 우수함
- 폐지안과 제정안의 시행 시기를 연동한 것은 절차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임.

다. 비용 추계 및 집행 현실성

- 비용 측면: 의원 정수(23인)를 고려할 때 신분증 제작(PVC 카드, 인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미미함.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로 인해 일괄 재발급이 불필요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 행정 현실성: 의회사무국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추가 인력 충원 없이 현행 행정력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함. 발급부터 환수·파기까지의 단계적 절차가 명문화되어 행정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라. 기대효과

- 법적 근거를 갖춘 신분증 제시를 통해 민원 현장 등에서 국민들이 의원의 신원을 확인할 때 공신력이 강화됨
- 직무 활동의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며, 이력 관리 체계화로 분실 및 부정 사용 리스크가 감소함

마. 종합의견

- 본 규칙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과거의 훈령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의회규칙을 제정하여 의원 신분증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형식의 적정성, 집행의 현실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신분증 ‘파기’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조문에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신분증에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등)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파쇄 또는 소각 등)으로 철저히 파기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안 제3조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안 제3조)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 및 세부적인 규격과 제식을 ‘별표’로 정함으로써 의원 신분증의 형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안 제5조

-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1항) 신분증 발급 시 사전에 발급번호, 발급일, 인적사항 등을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도록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력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제2항) 대장과 신분증의 사진을 동일하게 하고 ‘발급일 전 6개월 이내 촬영’으로 기한을 명시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 및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제3항) 신분증의 분실, 파손 등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분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임.

○ 신분증의 반납

안 제6조

- 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임기 만료, 사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의원이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신분증을 환수 및 파기하도록 하여, 발급부터 폐기까지의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발급되어 사용 중인 신분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재발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
----------	---

발의연월일 : 2026년 8월 5일

발의자 : 권영숙, 권영애, 김규일, 김육영,
박윤경, 소형준, 이동호, 이용진,
이인순, 이지민, 장선희

1. 제안이유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증의 규격·제식 등(안 제3조)

나.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5조)

다. 의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8. 20. ~ 2026. 8.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신분증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 ① 성북구의회 마크
- ② 사진 : 26mm × 33mm
- ③ 한글성명 : 홍길동
- ④ 영문성명 : Hong Gil-Dong
- ⑤ 자치구의회명(성북구의회)
- ⑥ 발급번호
- ⑦ 의원증 제목
- ⑧ 성명

- ⑨ 생년월일
- ⑩ 임기
- ⑪ 증명내용
- ⑫ 발급기관장명의(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장)
- ⑬ 발급기관장직인
- ⑭ 소재지 안내
- ⑮ 성북구의회 마크
- ⑯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C(100), M(60)

나. 회 색 : C(20), M(7), Y(7)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 C(19), M(18), Y(31)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옅색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의원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		발급	발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사유	재발급	만납	사진	비고
국장	의장	번호	년월일			(신규/재발급)	사유	일자		

의원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영문) :

2. 생년월일(성별) : (남/여)

3. 재발급 신청사유 :

4. 변 경 사 항 :

※ 기재사항 변경 시 작성

첨부 : 사진 2매(3.5cm × 4.5cm)

위와 같이 의원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장 귀하